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담당관)

가. 제안이유

읍면 단위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현재까지 관 주도로 진행되어 기존의 직능단체들은 일반 주민들의 대표성 취약하며, 이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읍면 단위의 주민협의 창구 필요

나.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의 주요수행업무 {조례(안) 제5조(기능)}
- 나.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관한사항 {조례(안) 제9조(위원의 선정)}
- 다.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주민총회)}
- 라.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 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6조(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읍면 단위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현재까지 관 주도로 진행되어 왔고,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읍·면단위의 주민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8. 3. 2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501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행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5장, 본칙 26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로 과거에 상정된 조례안은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평창군 읍면자치위원회 설치조례” 2건이 있었습니다.

-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4대 의회인 2001. 10. 6일 제89회 조례특위에서 보류, 철회되었고 제5대 의회인 2002. 8. 5일 제96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제7대 의회 2015. 4. 20일 제209회 조례특위에서는 부결되는 등 3차례 걸쳐 상정되었으나

농촌현실에 부적합하고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기존 번영회 기능과 중복되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 또는 부결된 바 있으며
지방분권 특별법 시행 이후,

이번 제출된 조례안과 같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9. 3. 25일 제24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되어 6월 5일 평창군수의 철회요청에 따라

6월 7일 철회조치 된 바 있습니다.

○ 지난번 철회 조례안과 이번 조례안 비교하면

| 철회 | 금번 | 비고 |
|---|--|----|
| <p>(신설)</p> <p>제6조(위원정수) 25명</p> <p>제7조(위원이 될 수 없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u>평창군 소속 공무원</u> · 지방의회 의원 <p>(신설)</p> <p>제14조(주민총회)제4호 (신설)</p> | <p>제5조(기능) “수탁업무”</p> <p>제6조(위원정수) <u>30명</u></p> <p>제7조(위원이 될 수 없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u>삭제</u> · 지방의회 의원 <p><u>제8조(권한)</u></p> <p>제14조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p> | |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을 추가하고,
주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권한을 부여”를 신설한 것으로
이는 2019. 8. 29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 강원도 18개시·군 조례제정을 살펴 볼 때
춘천, 홍천, 정선, 인제, 고성 5개 시군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 등 11개 시군은 기존조례인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주민주권 구현은
현 정부 6대전략 33개 과제 중 첫 번째 전략으로
주민참여권 보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주민참여 방식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자치회는 공무원 간섭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2019. 8. 26일 내려온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나
중요한 부분인 위원선정에 있어서

-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에 추천받은 사람에 대해 공개추천을

《행정안전부 표준안》

제9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강원도 내 시·군 중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춘천, 홍천, 정선, 인제, 고성은

공개추천,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사회단체 추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 강원도 시군별 조례제정 및 위원선정 현황 『붙임 1』

- 우리군은

본 위원에 대하여 선정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선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제1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운영세칙” 즉 “회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위법성이 있을 수 있고

입법목적으로 볼 때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를

비추어 볼 때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자칫 행정의 주관적 선정기준이 반영,

행정 중심적 위원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성이 부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 또는

타 시군과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표준안에는 20명

에서 50명까지로 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원도 시군별 위원선정 비교표 『붙임 2』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고
현 정부의 확고한 주민주권 구현, 18개 시군의 조례제정 상황 등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결정이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거나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붙임1』

강원도 시군 조례제정 및 위원선정 현황

| 시군별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센터 | 위원선정 |
|------------|-------|--------|-----------|
| 계 | 5 | 11 | |
| 행안부 표준안 | | | 공개추첨 |
| 춘천 | ○ | | 공개추첨 |
| 홍천 | ○ | | 위원선정위원회 |
| 정선 | ○ | | 사회단체별 추천 |
| 인제 | ○ | | 공개추첨 |
| 고성 | ○ | | 위원선정위원회 |
| 원주 | | ○ | 읍면장 선정·위촉 |
| 강릉 | | ○ | “ |
| 동해 | | ○ | “ |
| 태백 | | ○ | “ |
| 속초 | | ○ | “ |
| 삼척 | X | X | |
| 횡성 | | ○ | “ |
| 영월 | | ○ | “ |
| 철원 | | ○ | “ |
| 화천 | | ○ | “ |
| 양구 | | ○ | “ |
| 양양 | | ○ | “ |

『붙임2』

시·군별 위원선정 비교표

《행안부 표준안》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창군》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하되,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춘천시》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 대상을 제2호 대상보다 우선하여 구성하며,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천
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공개추천

《인제군》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원의 60퍼센트 이내

2.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원의 40퍼센트 이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를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내”를 “위원은 50명 이내”로 “수정”하며

○ 안 제9조제1항 전체를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서 총원의 80퍼센트 이내

2.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총원의 20퍼센트 이내”로 “수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서 총원의 80퍼센트 이내
2.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으로서 총원의 20퍼센트 이내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촉된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

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 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읍·면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

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